

#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74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6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월피아이사랑놀이터 신규 개소에 따른 대여료 등 수납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불부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2조제1호, 제31조제4호)
- 나. 상위법 불부합 조항 정비(안 제23조제1항, 제30조, 제35조)
- 다.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문 정비(안 제22조제1항, 제29조제4항)
- 라.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1조, 제17조제2항, 제19조의2)
- 마. 대여료, 연체료 규정 신설, 시설 사용료 기준 및 금액 변경(안 별표2)
- 바. 기존 별표2의 감면대상 관련 내용 구분에 따른 별표 신설 및 관련 조항 정비(안 제17조제4항, 별표2-1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 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【붙임 5】
  - 입법예고 : 2025. 3. 19. ~ 2025. 4. 8. 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 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6】
  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7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6세 미만”을 “7세 이하”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은 제척·기피·회피는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사용료 등과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·훼손에 따른”을 “사용료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별표2”를 “별표2-1”로 한다.

제19조의2 중 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센터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”를 “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계획수립을 할 때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시행규칙 제24조제2항”을 “시행규칙 제24조의2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재계약”을 “재위탁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4항 중 “시행규칙”을 “시행규칙 제41조”로 한다.

제31조제4호 중 “보건복지부령”을 “교육부령”으로 한다.

제30조,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하고, 별표 2-1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여성보육과
입 안 자	여성보육과장	두 현 지
	보육정책팀장	김 태 준
	담 당 자 ( 연 락 처)	김 다 래 (481-2266)

**【별지 1】**

[별표2]

**사용료 및 변상 등의 기준(제17조제2항 관련)**

**1. 도서·장난감·육아용품 대여료 및 변상료 등**

구 분		금 액	비 고
대여료	장난감 도서관 (도서 및 장난감)	연 10,000원	
	육아용품 대여점 (육아용품)	구매가격의 10% 이내	
변상료	공통	대여횟수 1~15회 이하	구매가격의 100% 변상
		대여횟수 16~30회	구매가격의 80% 변상
		대여횟수 31~45회	구매가격의 50% 변상
		대여횟수 46회 이상	구매가격의 30% 변상
연체료	장난감 도서관 (도서 및 장난감)	이용 제한	별도 연체료는 없으나 연체한 일수만큼 이용 제한
	육아용품 대여점 (육아용품)	구매가격의 3%× 연체일수	연체일수는 휴관일, 반납 당일 포함하여 산정 단, 연체료는 변상료를 초과하지 않음

▶대여기준: (장난감) 1회 3점 이하,(도서) 1회 5권 이하,(육아용품) 1인당 2점 이하

▶대여기간

- 도서 및 장난감: 대여일로부터 14일 이내

- 육아용품: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

※ 육아용품별 대여료는 위의 기준 범위 내에서 센터가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,  
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2. 프로그램 수강료**

프로그램명	대 상	수 강 료	비 고
육아지원프로그램	영유아 및 보호자	10,000원 이하	- 수강료는 1회 기준 - 필요시 재료비 별도 수납할 수 있음.
보육교직원 교육 및 세미나	보육교직원	20,000원 이하	

### 3. 시설 사용료

구 분		사 용 료	기 준	비 고
놀이실 및 체험실	개인	10,000원	연간	각 시설별 상이
		2,000 ~ 5,000원	회당	
	기관	5,000 ~ 30,000원	회당	각 시설별 상이 기관이용기준: 관내 어린이집
상담실	검사 비용	20,000원 이하	필요시	-
	상담료	10,000원	회당 (5회기부터)	-
다목적 강당	대관료	40,000원	2시간	-운영시간 외는 대관요금 의 20% 가산 -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%를 가산하며,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계산 -수용인원 · 다목적 강당: 180명 · 교육실: 55명
	냉·난방비	20,000원		
	빔프로젝터	10,000원		
교육실	대관료	20,000원		

※ 각 시설별 사용료는 위의 기준 범위 내에서 센터가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,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【별지 2】**

[별표2-1]

**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(제17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**

구 분	감 면 대 상	구 비 서 류
-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- 프로그램 수강료 - 시설 사용료	전액 감면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분증, 수급자증명서
		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신분증, 한부모가족증명서
		장애인 또는 그 가족 신분증,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가족의 경우)
		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가족 신분증,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가족의 경우)
		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신분증, 행복플러스카드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다자녀 가정의 경우)
		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, 국내거소사실증명서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영유아”란 <u>6세 미만의</u>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</p> <p>2. ~ 8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7세 이하</u>----- -----.</p> <p>2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 <u>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1. <u>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</u></p> <p>2. <u>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</u></p> <p>3. <u>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</u></p> <p>4. <u>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</u></p>	<p>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<u>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는 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다.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
정되는 경우

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17조(사용료 등) ① (생략)

② 사용료 등과 이용 및 대여 자료의 분실·훼손에 따른 변상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③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2(주민참여)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센터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, 보육교사,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

<삭 제>

<삭 제>

제17조(사용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사용료 및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별표 2-1 -----  
-----.

제19조의2(주민참여)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계획수립을 할 때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있다.

제22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시립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제23조(위탁계약 및 기간 등)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,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~ ⑦ (생략)

제29조(비용의 보조)

① ~ ③ (생략)

④ 시장은 법 제53조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

----

제22조(위탁운영) ①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시행규

칙 제24조의2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위탁계약 및 기간 등) ①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 재위탁 -----

-----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비용의 보조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시

행규칙 제41조 -----

집연합회에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30조(비용 보조의 제한) 시장은

<삭 제>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.

- 1.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
- 3. 평가 미인증 시설

제31조(보조금의 반환)시장은 다

제31조(보조금의 반환) -----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~ 3. (생략)
- 4.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 교  
육부령-----

해당하는 경우

제3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별표 2]

사용료 및 변상 등의 기준  
(제17조관련)

1.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및 변상료

구 분		금 액	비 고
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및 보호자 대상	대여료	연 10,000원	- 회원 신청 시 구비 서류: 신 분증, 주 민등록등 본
	변상료	대여횟수 1~15회 이하	구매가격의 100% 변상
		대여횟수 16~30회	구매가격의 80% 변상
		대여횟수 31~45회	구매가격의 50% 변상
		대여횟수 46회 이상	구매가격의 30% 변상

▶ 대여기준: 장난감 1회 2점 이하, 도서 1회 5권 이하

▶ 대여기간: 대여일로부터 14일 이내

<삭 제>

[별표 2]

사용료 및 변상 등의 기준  
(제17조제2항관련)

1.도서 · 장난감 · 육아용품 대여료  
및 변상료 등

구 분		금 액	비 고
대 여 료	장난감 도서관 (도서 및 장난감)	연 10,000원	
	육아용품 대여점 (육아용품)	구매가격의 10% 이내	
변 상 료	공통	대여횟수 1~15회 이하	구매가격의 100% 변상
		대여횟수 16~30회	구매가격의 80% 변상
		대여횟수 31~45회	구매가격의 50% 변상
		대여횟수 46회 이상	구매가격의 30% 변상
연 체 료	장난감 도서관 (도서 및 장난감)	이용 제한	별도 연체료는 없으나 연체한 일수만큼 이용 제한
	육아용품 대여점 (육아용품)	구매가격의 3%×연체일수	연체일수는 휴 관일, 반납 당 일 포함하여 산정 단, 연체료는 변상료를 초과 하지 않음.

▶ 대여기준: (장난감) 1회 3점 이하,(도서) 1회 5권 이하, (육아용품) 1인당 2점 이하

2. 프로그램 수강료(생략)

3. 시설 사용료

구분		사용료		기준	비고
영아 놀이실 및 자유 놀이실	개인	10,000원		연간	-
	기관	5,000원		회당	기관 이용기준: 관 내 어린이집
	카드 재 발급비	3,000원		-	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
유아 체험실	개인	2,000원		회당	-
	기관	20,000원		회당	기관 이용기준: 관 내 어린이집
상당실	검사 비용	20,000원 이하		필요시	-
	상당료	10,000원		회당 (5 회기부 터)	-
대관 요금	다목적 강당	이용료	40,000 원	2시간	-운영시간 외는 대 관요금의 20% 가산 -기준시간을 초 과할 경우 매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%를 가산하 며, 2시간 미 만은 2시간으 로 계산 -수용인원 · 다목적강당 : 180명 · 교육실 : 55명
		냉난방 비	20,000 원		
		빔프로 젝트	10,000 원		
	교육실 이용료	20,000 원			

※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(제17조

▶대여기간

- 도서 및 장난감: 대여일로부터 14일  
이내

- 육아용품: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

※ 육아용품별 대여료는 위의 기준 범위 내에  
서 센터가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  
되,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. 프로그램 수강료(현행과 같음)

3. 시설 사용료

구분		사용료		기준	비고
놀이실 및 체험 실	개인	10,000원		연간	각 시설별 상이
		2,000 ~ 5,000원		회당	
	기관	5,000 ~ 30,000원		회당	각 시설별 상이 기관이용기준 : 관내 어린이집
상당실	검사 비용	20,000원 이하		필요시	-
	상당료	10,000원		회당 (5회기 부터)	-
다목적 강당	대관료	40,000원		2시간	-운영시간 외는 대 관요금의 20% 가산 -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%를 가산하며,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계산 -수용인원 · 다목적 강당: 180명 · 교육실 : 55명
	냉·난 방비	20,000원			
	빔프로 젝터	10,000원			
교육실	대관료	20,000원			

※ 각 시설별 사용료는 위의 기준 범위 내에  
서 센터가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  
되,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 삭제 >

제3항 관련)

구 분	감 면 대 상	구 비 서 류	
-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-프로그램 수강료 -시설 사용료	전액 감면	국민기초생활수급자	신분증, 수급자증명서
		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	신분증, 한부모가족증명서
		장애인 또는 그 가족	신분증,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
		국가보훈대상자 또 는 그 가족	신분증, 국가보훈대상 자증명서, 가족관계증 명서(가족의 경우)
		다자녀 가정 및 임 산부	신분증, 행복플러스카드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 계증명서(다자녀 가정의 경우)
		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	외국인등록증

< 신 설 >

[별표 2-1]

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 
(제17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

구 분	감 면 대 상	구 비 서 류	
-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-프로그램 수강료 -시설 사용료	전액 감면	국민기초생활 수급자	신분증, 수급자증명서
		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	신분증, 한부모가족증명서
		장애인 또는 그 가족	신분증,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, 가족 관계증명서(가족의 경우)
		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가족	신분증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(가족의 경우)
		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	신분증, 행복플러스카드, 주민 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다자녀 가정의 경우)
		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	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 서, 국내거소사실증명서